

[연재]

축산인의 세무상식④

국세 및 지방세 불복에 대한 구제의 길②

대리이충선

〈서울우유협동조합 경리파〉

4. 감사원법상의 국세심사청구

가. 심사청구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청구 대상 전부이며 당해처분이 있었던 날(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는 감사원용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서 및 관계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제출시는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3부(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처분인 경우에는 4부)를 접수시키면 국세청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으로 송부한다.

다. 결정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한이 경과하여 결정 통지하여도 법률상 영향이 없다.

5. 행정소송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절차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만족한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가. 소송청구기간

①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못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기한이 경과한 날) 이일 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소송대상자 및 제출처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 즉 고지서를 발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고지서를 발부한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출한다.

6. 민사소송

처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구제받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 결정된 경우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 청구 기간 경과로 각하 판결이 난 경우

다. 조세관계 민사소송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소송

② 압류등기말소 청구소송

③ 조세채권 확인소송

④ 부동산공매 무효 확인 소송

7. 지방세의 불복 심사청구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관청에 대하여 재조사청구 또는 그 상급관청에 심사청구 및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그리고 관할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조사청구 등을 하였다 해도 당초 처분의 집행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가. 재조사 청구

보통 이의신청이라고도 하며 재조사청구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재조사청구는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① 청구기간 : 당해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부과징수를 한 행정기간에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

⑨) 지방세법 별지 34호서식인 “지방세 재조사청구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접수증을 청구자에게 발부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정기간 제외) 재조사청구서의 정본 1부를 결정기간에 도달하도록 송부한다.

③ 접수기관

시·군·도세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접수하고 서울특별시세나 직할시세는 구청장에게 접수한다.

④ 결정 및 결정기간

⑨) 결정기관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때에 따라서 45일간 결정을 연기 할 수 있다)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결정치 않으면 청구인은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심사청구

① 청구기간 : 재조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결정통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한다.

② 제출서류 : 지방세법 별지 제35호 서식인 “지방세 심사청구서” 2부와 불복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접수시킴 (지령 46의 2)

③ 결정 : 심사청구는 도시사가 결정권자이며 (서울특별시세나 직할시세는 내무부장관)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④ 도지사가 심사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바로 가능하지만 그 전에 시장·군수와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재심사청구

① 심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 3부(서식은 심사청구서와 동일)와 불복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접수한다.

②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그 중 2부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그 중 1부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결정하게 한다.

③ 결정기관은 내무부장관이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라.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① 지방세에 부과처분, 체납처분의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법의 심사청구서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4부를 제출한다.

③ 결정기간 등은 국세의 경우와 같으며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 행정소송

① 지방세의 부과징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은 관할 고등법원이 1심이 되며 1심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③ 지방세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 있어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통지가 없는 때에는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동안 연재해온 이 충선씨의 원고는 이번호로 끝을 맺고 다음 호부터는

다른 필자의 글로서 계속됩니다. 집필자 이 충선씨께 감사드립니다(편집자)